



여수지방해양수산청

수신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
(경유)

제목 2026년 3~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

1. 2026년 3~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(유가연동보조금)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대상기간 : 2026. 3. 1. ~ 2026. 4. 30.까지 구입분
- 나. 신청대상 : 내항화물운송사업자(「해운법」 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)
- 다. 지원대상 :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 (MDO,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)
- 라. 지원단가

유류세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- '26.3.1. ~ '26.3.26. : 경유 1L 당 292.665원 - '26.3.27. ~ '26.4.30. : 경유 1L 당 213원
유가연동보조금	<p>[붙임3] 참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」 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(~'26.4.30.) 및 지급비율 상향(50%→70%)

- 마. 신청기간 : 2026. 5. 1.(금) ~ 5. 11.(월) 18:00까지(주말, 공휴일 제외)
- 바. 제출서류 :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
* 경유의 계열 MGO, MF, MDO 등 표기 .

※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

- '항계 내·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'는 「해운법」 상 내항화물 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
-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2.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(붙임2)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,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「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」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,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,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.

- 붙임
- 1.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.
 - 2.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.
 - 3. 유류세보조금(유가연동보조금) 지급단가 1부. 끝.

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



주무관

조윤경

주무관

이상훈

과장

전결 2026. 4. 30.

이수진

협조자

시행 선원해사안전과-3655

(2026. 4. 30.)

접수

우 59713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1로 107

/ <http://yeosu.mof.go.kr>

전화번호 061-650-6046

팩스번호 061-654-2456

/ yun24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